#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74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진종오・우재준・김예지

장동혁 • 박정훈 • 박충권

김형동 • 김미애 • 서천호

백종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 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 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건의한 청년정책의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청년정책위원회)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한다)
  - 2. 청년정책의 분석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는 위원 한 명이 공동으로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1.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 3.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기간으로 한다.
- 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6개월마다 1회, 임시회의는 공동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⑥ 청년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청년정책위원회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청년정책의 제도개선과 관 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 해서는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

-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년정책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2
항을 심의·조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5
사항	사항(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가 의결을 거
	쳐 건의한 청년정책의 제도개
	선 사항을 포함한다)
6. • 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13조의2(청년정책위원회)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
	관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
	회를 둔다.
	②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위원회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이 소관하는 청년 정책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

   적 점검에 관한 사항(제9조제

   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한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한다)
- 2.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청년정 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 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는 위원 한 명이 공동으로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 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 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 1.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 3.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6개월마다 1회, 임시회의는 공동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⑥ 청년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청년정책위원회는 제2항제3 호에 따른 청년정책의 제도개

선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년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정책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